

[EU] 1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MRL) 조정

- 2017년 1월 30일에 결정된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0에 따라 특정 농약의 특정 작물에 대한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MRL) 조정
 - 배추에 포함된 비펜트린 최대 허용 잔류량, 기존 0.05mg/kg에서 0.01mg/kg으로 감소
 - 딸기, 블랙베리, 대파 등의 펜프로피모르프 최대 허용 잔류량, 기존 1mg/kg에서 0.01mg/kg로 감소
- 2017년 1월 30일에 결정된 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1)은 잇따른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 조정 신청 검토
 - 중앙아메리카에서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는 디엔토펜카브, 아르헨티나에서 대두 재배에 사용되는 할록시포프 경우 각 국가의 농작법을 적용할 경우 농약 잔류량이 유럽연합의 기준을 초과함을 주장하며 두 품목에 대한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호박씨에 남아있는 플루아지포프-피의 경우 기준이 기존 10mg/kg에서 5mg/kg으로 조정되며 이는 2017년 1월 19일부터 적용
 - 루바브 재배에 사용되는 아족시스트로빈, 사탕무의 플루오피람, 양상추 및 샐러드 작물에 사용되는 프로파퀴자포프의 경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농약잔류량을 유지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유럽연합 내의 가금류 및 난류 수입 관련 추가 주의 검역

- 2017년 1월 27일, 유럽연합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51은 이스라엘 및 마케도니아 수입 가금류 및 난류에 대한 추가 검역 인증 요구
 - 이스라엘은 2015년부터 뉴캐슬병에 감염된 가금류 살처분 정책을 폐기한 상태로 조류 질병과 관련된 실험실 실험 또한 실행 여부가 보장되지 않음
 - 마케도니아는 2016년 1월 시행된 유럽연합의 현지 감사 결과 현지에서 사육되는 가금류가 제 3국에서 수입된 가축으로 밝혀짐
- 뉴캐슬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스라엘 5번 도로 남부지역은 추가 검역 인증 대상에서 제외

2. 터키산 패류 수입에 대한 감사 연장

- 2017년 1월 27일, 유럽 위원회는 터키산 패류 수입 허가를 위한 추가 감사 기간 만료일 2016년 12월을 2017년 12월까지 연장
 - 2015년 9월 실시된 유럽연합 위원회 감사단의 터키 현지 조사 결과 유럽연합 수출 조개류 일부가 유럽연합 수입식품 미생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 연구소의 실태도 유럽연합 요구 기준에 미달
- 2013년 유럽연합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743/2013에 따라 터키산 식용 패류는 유럽연합의 위생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 상태임

3. 식물성 식품 위해요소 세관 검사 업데이트

- 2016년 12월 1일 유럽연합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2107으로 결정된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의 위해요소 세관 검사 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로 적용

- 세관 검사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품목으로는 볼리비아와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수단 산 땅콩 및 땅콩 함유 제품, 캄보디아 산 아스파라거스 콩, 중국 샐러리, 중국 산 꽃양배추, 가나 산 팜유, 인도 산 효소, 시에라리온 산 수박, 터키 산 포도 나뭇잎, 우간다 산 참깨 종실, 우즈베키스탄 산 말린 살구 및 살구, 베트남 산 고수잎과 오크라 등이 있음
- 특히, 볼리비아 산 땅콩 및 땅콩 함유 제품, 우간다 산 참깨 종실과 가지, 베닌 산 파인애플, 이집트 산 생식용 포도, 터키산 석류는 새롭게 발견된 위해요소에 대한 강화된 검사 도입

품목	CN code	TARIC	원산지	위해요소	세관검사(%)			
파인애플	0804 30 00		베닌	농약잔류	20			
땅콩 및 땅콩 함유	1202 41 00		볼리비아	아플라톡신	50			
	1202 42 00							
	2008 11 10							
	2008 11 91							
	2008 11 96							
	2008 11 98							
긴동부	ex 0708 20 00	10	캄보디아	농약잔류	50			
	ex 0710 22 00							
가지	0709 30 00	72						
	ex 0710 80 95							
중국샐러리	ex 0709 40 00	20						50
꽃양배추	ex 0704 90 90	40				중국	농약잔류	50
			차	902	10			
긴동부	ex 0708 20 00	10	도미니카공화국	농약잔류	20			
	ex 0710 22 00							
피망	0709 60 10							
	0710 80 51							

고추	ex 0709 60 99 ex 0710 80 59	20			
딸기	0810 10 00		이집트	농약잔류	10
피망	0709 60 10 0710 80 51				10
고추	ex 0709 60 99 ex 0710 80 59	20			20
생식용포도	0806 10 10				
땅콩 및 땅콩 함유	1202 41 00 1202 42 00 2008 11 10 2008 11 91 2008 11 96 2008 11 98		감비아	아플라톡신	50
헤이즐넛	0802 21 00 0802 22 00		조지아	아플라톡신	20
팜유	1511 10 90 1511 90 11 ex 1511 90 19 1511 90 99	90	가나	수단 염료	50
참깨종실	1207 40 90		인도	살모넬라균	20
효소	3507			클로람페니콜	50
완두콩	ex 0708 10 00	40	케냐	농약잔류	10
땅콩 및 땅콩 함유	1202 41 00 1202 42 00 2008 11 10 2008 11 91 2008 11 96 2008 11 98		마다가스카르	아플라톡신	50
산딸기	0811 20 31 ex 0811 20 11 ex 0811 20 19	10	세르비아	노로바이러스	10
수박	ex 1207 70 00 ex 1106 30 90	10	시에라리온	아플라톡신	50

	ex 2008 99 99	30			
		50			
땅콩 및 땅콩 함유	1202 41 00 1202 42 00 2008 11 10 2008 11 91 2008 11 96 2008 11 98		수단	아플라톡신	50
고추	ex 0709 60 99	20			10
긴동부	ex 0708 20 00	10	태국	농약잔류	20
	ex 0710 22 00	10			
가지	0709 30 00 ex 0710 80 95	72			
말린 살구 및 살구	0813 10 00 2008 50 61			아황산염	10
레몬	0805 50 10				20
피망	0709 60 10 0710 80 51		터키	농약 잔류	10
포도나뭇잎	ex 2008 99 99	11; 19			50
석류	ex 0810 90 75	30			20
가지	0709 30 00 ex 0710 80 95	72			
에티오피아가지	ex 0709 99 90	80	우간다	농약 잔류	20
	ex 0710 80 95	72			
참깨종실	1207 40 90			살모넬라균	50
피스타치오	0802 51 00 0802 52 00		미국	아플라톡신	10
말린 살구 및 살구	0813 10 00 2008 50 61		우즈베키스탄	아황산염	50
고수잎	ex 0709 99 90	72	베트남	농약잔류	50
바질	ex 1211 90 86	20			

민트	ex 1211 90 86	30			
파슬리	ex 0709 99 90	40			
오크라	ex 0709 99 90	20			50
고추	ex 0709 60 99	20			
용과	ex 0810 90 20	10			10

*출처: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6R2107>

III 통관문제사례

* 별첨 엑셀 파일 참고